

##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

당사 운용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대상투자신탁: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

□ 변경 대상서류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

□ 변경일: 2010년 9월 16일

□ 변경 내용: 선취판매수수료 관련 정정

### \* 집합투자규약 변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40조(판매수수료)	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0.75을 초과한다.	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0.75 범위내에서 부과한다. 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. 판매회사는 제2항의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,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\* 투자설명서 변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: 납입금액의 <b>0.75%</b> (주석추가)	종류 A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: 납입금액의 <b>0.75% 이내</b> 주)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,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주석 추가	* 종류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.75%로 가정하여 산정함.